

2019년 제4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 신청 접수 기간 : '19. 9. 23.(월) ~ 10. 7.(월) 18:00 (사전 접수 불가)
- 선정 업체 발표 : '19. 10. 23.(수) 14:00, 16:00 개별 문자 통보

□ 신청절차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에 팩스, 우편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www.work.go.kr) 후 신청서류 제출
 -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14일 이후)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 베틀시장, 교차로 등 일간지 3일 이상 게재시 워크넷 구인등록 기간 7일 경과하면 신청 가능

※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도입 대행을 동시에 진행 하시려면 본회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포털검색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 '2019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안내')

- ① 고용허가신청서(주거시설표 포함) ②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총 4개 서류 FAX(051-711-7361), E-mail(hudeun@kbiz.or.kr) 송부

※ 서식 변경 예정으로 9월 23일 월요일 게시

□ 배정방법 : 점수제

- 기본점수 : 외국인 허용인원 대비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 비율 등
- 가점항목 : 우수기숙, 사업주 교육이수 등
- 감점항목 : 출국만기보험 체납,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등

□ 대상국가 : 16개국(송출국 사정에 따라 신청 국가 변동 가능) :

-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몽골, 라오스

□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협자	총 한도	신규 한도(1년)	내국인 피보협자	총 한도	신규 한도(1년)
1~5명	5명 이하	3명	51~100명	15명 이하	5명
6~10명	7명 이하		101~150명	20명 이하	
11~30명	10명 이하	4명	151~200명	25명 이하	6명
31~50명	12명 이하		201~300명	30명 이하	

※ 외국인고용기간 중 내국인근로자 증가, 부리산업 해당 사업장 등은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허용

※ 업종 및 지역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

※ 문의 사항 및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처

·담당자 : 김 세 은 과장
·FAX : 051) 711-7361

·전화 : 051) 861-9375, 9365
·E-mail : hudeun@kbiz.or.kr

<별지제4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신청서

주된 사업장 (사업주)	1-①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1-②사업자등록번호		
	1-③사업장명		1-④대표자		
	1-⑤소재지	□□□-□□□		1-⑥ 연락처	전 화
					휴대폰번호
					FAX
	1-⑦업종		1-⑧총사업장 수		
1-⑨상시근로자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고 용 허 가 사 업 장 신 청	2-①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2-②사업자등록번호		
	2-③사업장명		2-④대표자		
	2-⑤소재지	□□□-□□□		2-⑥ 연락처	전 화
					휴대폰번호
					FAX
	2-⑦업종		2-⑧사업내용		
	2-⑨상시근로자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2-⑩월임금수준		내국인근로자 : 만원		외국인근로자 : 만원	
2-⑪가입보험		고용□ 산재□ 건강□ 국민□			

신 청 내 용	⑫인력부족직종 (모집직종)		⑬부족인원 (모집인원)		명
	⑭직무내용				
	⑮내국인구인신청일				
⑯고용허가서 발급요건충족여부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에 해당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 일 □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음 □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5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기고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			

구 인 사 항	⑰모집직종		⑱모집인원	성 별		명	최 초 자 ■
				남	여		
	⑲직무내용	※ 구체적으로		⑳국 적	1) 2)		
	㉑학 력	최저:	최고:	㉓자격면허	1)		
	㉒전 공				2)		
	㉔연 령	만 ~ 세		㉕근무예정지			
	㉖언어능력	1. 한국어 상□ 중□ 하□ 무관□			2. () 상□ 중□ 하□ 무관□		
㉗기타(경력등)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자의 경우 뒤쪽의 '근로조건'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 >

근로조건	㉘근무시간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교대제(□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기타)		일평균 시간의 근로시간	시간	
	㉙근로계약기간	□12개월 □24개월 □36개월 * 최고 3년까지 계약가능				
	㉚휴일 및 휴게시간	□일요일 □공휴일 □매주토요일 □격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일요일, 공휴일, 매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격주토요일 □일요일, 매주토요일 □기타() (공휴일 : □유급 □무급) 휴게시간 : 1일 (분)				
	㉛임금 및 지급방법	기본급	□월급 □주급 □일급 □시급 ()원			
		수급간중임금	□활용()원[□1개월 □2개월 □3개월] / □미활용			
고정적 수당		(수당 :)원, (수당 :)원, (상여금 :)원				
월통상임금		()만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지급방법	□통장 입금 □직접 지불	지급일	매월	일	
㉜숙식제공	1)숙박시설 제공 - []제공 []미제공 유형(□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아파트 또는 주택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근로자 부담금액 :)원		2) 식사 제공 - 제공 여부(□조식, □중식 □석식), □미제공 - 근로자 부담금액 :)원		기 타	
㉝기 타						
㉞신청사유	□ 내국인 미채용 □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미체결 □ 분실 □ 기타					
㉟대행기관 선택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중소기업중앙회 □ 대한건설협회 □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상 담 사 항						

<p>「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허가서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수수료
	없 음
<p>※ 구비서류 :</p> <p>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 한함)</p> <p>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함)</p>	

◀ 유 의 사 항 ▶

-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의 사유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직종별로 고용허가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㉘ 사업장이 한개인 경우에는 2-①~2-⑪, ⑫~⑭만 기재합니다.
- ㉙ 가사사용인이 고용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란에서 2-②~2-⑪만을 기재하되, 2-②에는 주민등록번호를, 2-③, 2-④에는 세대주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⑦업종코드설명집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그 업종의 세세분류까지 기재하여야 하고 업종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담 후 기재합니다.(1-⑦도 동일합니다)
- ⑫~⑬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시에는 신청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⑰·⑱ 모집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직종명, 모집인원을 기재합니다.
- ⑲ 모집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할 직무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 ⑳~㉑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학력, 전공, 자격면허를 기재하되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관계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㉒모집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나이와 최대 나이를 만 나이로 기재합니다.
- ㉓직무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언어별 언어능력을 기재합니다.
- ㉔~㉕예정된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기재합니다.
- ㉖ 외국인근로자 도입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행해야할 각종 행정업무 대행,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편의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의미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모든 업종에서 대행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업, 건설협회는 건설업, 농협중앙회는 농축산업, 수협중앙회는 어업에서만 대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교육 및 해외에서의 대행업무를 제외한 기타 업무는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

- 사업장 명칭 및 업종 :
- 연락처 : (사무실)
(팩스)

- 사업주 성명:
(휴대전화)
(E-mail) @

* 귀하의 휴대전화번호 및 E-mail은 수수료 입금용 가상계좌 등 각종 안내사항을 통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 소재지 :

대행기관(이하 “을”이라 한다)

- 명 칭: 중소기업중앙회
- 연락처 : (사무실) 051-861-9375 (팩스)
- 대표자 성명: 김 기 문
-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갑”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을”에게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행수수료) 사용자는 제2조의 대행업무 신청에 대한 수수료()을 대행기관에 납부한다.

제2조(대행업무 범위) 별지와 같다.

제3조(수수료 납부) “갑”은 제1조에서 정한 대행수수료를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을”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이 대행계약 전에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라도 각종 신청대행수수료(86,000원)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환불) “을”은 사용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외국인근로자를 인수받지 못하거나 인수 후 14일 이내(마약 반응검사 소요기간 등으로 14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변동신고가 가능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환불하여야 한다.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취소시점에 따라 환불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유발생 또는 사유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로 대체를 허용한다.

<수수료 환불계좌 정보>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비고

제5조(계약서 효력 등) ① 이 계약서의 효력 발생일은 대행업무 수수료 수납일로 한다.
② 제3조에 정한 기한 내에 대행수수료를 “을”에게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이 계약서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 용 자 (갑)

(인)

대행기관 (을)

중소기업중앙회장 김 기 문



[제3호서식 별지]

□ 신규입국자

대행업무		대행 세부업무	1인당 수수료		신청여부(✓)	
필수	근로자 도입위탁	·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60,000원		✓	
	취업교육	· 외국인 취업교육	건설업	224,000원		
			농업·축산업·어업	210,000원		
		제조업·서비스업	195,000원	✓		
선택	각종 신청대행	· 내국인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하 수령 포함)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신규 입국자 고용 시	43,000원 입국전	86,000원	✓
		· 고용변동신고 ·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 외국인근로자업무상 재해시 산재·사망신고 등	신규 입국자 고용 시	43,000원 (3년) 입국후		
		사업장 변경자	1,200원×잔여체류기간(월)			
	편의 제공	· 통·번역지원 및 사용자의 고충상담 · 전용보험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신청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 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신규 입국자 고용시	76,000원(3년)		
사업장 변경자			2,100원×잔여체류기간(월)			

* 근로계약해지 등에 따른 수수료 환불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 수수는 입국후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의 경우, 8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하며 편의제공 수수료의 경우, 2,0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요망

【 위 임 장 】

『출입국관리법 제9조』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권한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임합니다.

성 명(대 표 자 명)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팩 스 번 호 :

【 행정대행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은 귀하가 본인에 대한 행정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 목 : 성명, 전화번호
2. 기 간 : 대행계약 체결일 ~ 종료일
3. 목 적 : 대행 서비스 및 기타 중소기업 정책·제도 관련 안내 등

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201 년 월 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④ 침 실	① 남 녀 구 분	<input type="checkbox"/> 남 녀 구 분	<input type="checkbox"/> 남 녀 미구 분
	② 근 무 조	<input type="checkbox"/> 근무조 있음 (<input type="checkbox"/> 조별 구 분 <input type="checkbox"/> 미구 분) <input type="checkbox"/> 근무조 없음	
	③ 침 실 면 적	<input type="checkbox"/> 1인 별 2.5㎡ 이상	<input type="checkbox"/> 1인 별 2.5㎡ 미 만
	④ 침 실 높 이	<input type="checkbox"/> 2m 이상	<input type="checkbox"/> 1.5m~2m <input type="checkbox"/> 1m~1.5m <input type="checkbox"/> 1m 미 만
	⑤ 거 주 인 원	침 실 1개 당 () 명	
	⑥ 수 납 공 간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⑦ 잠 금 장 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세부 작성방법
 ■ 침실구분: 층 또는 벽으로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
 ■ 근무조: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근로자

⑤ 화 장 실	① 유 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② 종 류	<input type="checkbox"/> 수 세 식	<input type="checkbox"/> 재 래 식
	③ 위 치	<input type="checkbox"/> 숙 소 내 부	<input type="checkbox"/> 숙 소 외 부
	④ 잠 금 장 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⑥ 세 면 및 목욕 시설	① 유 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② 종 류	<input type="checkbox"/> 입 식 세 면 대	<input type="checkbox"/> 샤워 시설 <input type="checkbox"/> 욕 조 <input type="checkbox"/> 기타()
	③ 위 치	<input type="checkbox"/> 숙 소 내 부	<input type="checkbox"/> 숙 소 외 부
	④ 온 수	<input type="checkbox"/> 온 수 사 용 가 능	<input type="checkbox"/> 온 수 사 용 불 가
	⑤ 잠 금 장 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⑦ 난 방 시 설	① 유 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② 종 류	<input type="checkbox"/> 보일러 난방(건식온수난방 포함) <input type="checkbox"/> 전기필름·전기패널 <input type="checkbox"/> 온풍기 <input type="checkbox"/> 라디에이터 <input type="checkbox"/> 연탄보일러 <input type="checkbox"/> 재래식 온돌	

❖ 세부 작성방법
 ■ 난방시설은 난방을 위해 건물에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장판, 난로 등 난방기구는 미포함

⑧ 냉 방 시 설	① 유 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② 종 류	<input type="checkbox"/> 선풍기	<input type="checkbox"/> 에어컨 <input type="checkbox"/> 기타()

⑨ 채 광 및 환기 시설	① 유 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② 종 류	<input type="checkbox"/> 개폐형 창문 <input type="checkbox"/> 폐쇄형 창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없음	

⑩ 소 방 시 설	<input type="checkbox"/> 소방시설 설치(소화기, 화재감지기)	<input type="checkbox"/> 소방시설 미설치
-----------	--	-----------------------------------

⑪ 전 기 안 전	<input type="checkbox"/> 전기안전진단 이행	<input type="checkbox"/> 전기안전진단 미이행
-----------	------------------------------------	-------------------------------------

❖ 세부 작성방법(농축산업만 해당)
 ■ 전기안전진단은 숙소시설을 포함한 시설 또는 숙소시설 단독으로 안전진단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및 숙식비 관련 안내

□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임금 10% 감액 적용 관련

○ 감액 적용 직종

-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에 따라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된 직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임금 10% 감액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신청 시, 귀사가 필요로 하는 모집직종(생산직, 단순직)을 명확히 확인한 후 아래 표를 참고하여 올바른 직종을 선택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적용 여부에 따른 직종 구분〉

감액 가능 직종	감액 불가 직종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제조 단순직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섬유·의복 생산직	
식품 가공·생산직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 적용 절차

- 워크넷 : 내국인 구인 노력 시 실제 업무에 따라 상기 표를 참고하여 올바른 직종을 선택하여 구인
- 고용허가서 신청
 - 1) 고용허가서 신청서 작성 시 [구인사항 - ⑰모집직종] 란에 실제 업무에 따라 올바른 직종을 기재
 - 2) [근로조건 - ⑳임금 및 지급방법 - 수습기간 중 임금] 란에 활용 체크 후 내용 기재하여 신청

□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관련

○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숙식비 부담금액 명시

-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 사전 및 사후 공제는 고용허가서 숙식제공 란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자 부담금액 내에서 적용됩니다.
- 그러므로 숙식비 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허가서 신청서 작성 시 [근로조건 - ㉔숙식제공] 란에 있는 제공 여부와 근로자 부담금액을 확실히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숙식비 사전공제를 희망하는 경우, 자국어로 된 '공제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가능

※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징수 상한

1)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등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20%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13%

2)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등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15%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8%